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9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유영하·이인선·강선영

김정재 • 서천호 • 이달희

송언석 • 권영세 • 임종득

박성훈 · 김기웅 · 박충권

박정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(SPC: Specialized Purpose Company)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(기초자산)으로 하여 유동화증권 (P-CBO: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)을 발행할 때,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(P-CBO)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(SPC)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.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(P-CBO)이 특수채(공공기관이발행함)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,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이용한 유동화증권(P-CBO)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유동화회사(SPC)가 유동화증권(P-CBO)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

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,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3,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채무를 보증"을 "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"으로 한다.

제2조제8호 중 ""유동화회사보증""을 ""유동화보증""으로, "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(이하 "유동화회사"라한다)가 부담하는 채무"를 "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된 채무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"회사채등"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포함한다),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.
- 11. "회사채등 유동화"란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유동화전 문회사(이하 "유동화회사"라 한다)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자 산보유자(이하 "자산보유자"라 한다)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, 당해 유동화자산

- 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 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
- 나.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,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(이하 "회사채등 유동화신탁"이라 한다)
- 12. "유동화증권"이라 함은 유동화회사가 제11호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(이하 "유동화사채"라 한다)와 기금이 제11호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(이하 "유동화수익증권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23조제1항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7호)중 "제1호부터 제6호까지"를 "제1호·제2호·제2호의2·제2호의3·제2호의4, 제3호부터 제8호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보증업무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"를 "재보증업무"로 한다.

- 2의3.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
- 7. 유동화보증
- 8. 회사채등 유동화신탁

제23조의3의 제목 "(유동화회사보증 등)"을 "(유동화보증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),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"를 "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에 대해 부담하는 신용공여채무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유동화회사보증"을 "유동화보증"으로, "자산보유자(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)가"를 "자산보유자가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"를 "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"를 "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수탁자(이하 "유동화회사등"이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.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3조의6(회사채등 유동화신탁)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 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.
 - ② 「신탁법」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

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,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다.

-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·보유·신탁 및 유동화수 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이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, 제40조, 제61조, 제63조, 제103조제3항, 제108조제6호, 제114조,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,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.
-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1조 및 「신탁법」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수 있다.
-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신탁법」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.
-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

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,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. 이 경우 「신탁법」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 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 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제2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유동화회사보증"을 "유동화보증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- 가.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
- 나.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
- 다.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 · 운용 방안
- 라.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
- 마.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

제25조제1항 중 "유동화회사보증"을 "유동화보증"으로 한다.

제27조 중 "신용보증(유동화회사보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"을 "신용보증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 또는 같은 항제7호에 따라 유동화보증을 할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단서 중 "유동화회사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"를 "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"로 한다.

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구상채권의"를 "구상채권(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"로 한다.

제33조제1항 전단 중 "기업"을 "기업(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한다.

제33조의2 중 "제4호 및 제7호"를 "제4호ㆍ제8호 및 제9호"로 한다.

제43조의2제1항 중 "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"을 "제23조제1항제2호·제2호의2·제2호의3·제2호의4,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23조제1항제5호"를 "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신용보증기	제1조(목적)
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	
약한 기업의 <u>채무를 보증</u> 하게	<u>채무보증과 회사채</u>
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	등 유동화를 수행
히 하고, 신용정보의 효율적인	
관리·운용을 통하여 건전한	
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	
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	
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"유동화회사보증"</u> 이란 기금	8. <u>"유동화보증"</u> <u>회</u>
이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	사채등 유동화와 관련된 채무
률」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	
문회사(이하 "유동화회사"라	
한다)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	
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	
것을 말한다.	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. "회사채등"이란 기업이 발</u>
	행한 회사채(전환사채, 신주

<신 설>

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),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을 말한다.

11. "회사채등 유동화"란 「자 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 가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(이하 "유동화회사"라 한다)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(이하 "자산보유자"라 한다)로부터 양수한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, 당해 유동화자산의의 관리・운용・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일련의 행위

<u>나.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</u> 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 <신 설>

제23조(업무)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2의2. (생 략)

<신 설>

부터 양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,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행위(이하 "회사채등 유동화신탁"이라 한다)

12. "유동화증권"이라 함은 유 동화회사가 제11호가목의 회 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 는 사채(이하 "유동화사채"라 한다)와 기금이 제11호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 하는 수익증권(이하 "유동화 수익증권"이라 한다)을 말한 다.

제	23	33	돈(Ç	1 1	是 .)	(1)		 		 	-	_	 	_	-
							_			_	 _	_	 	_		 _	_	-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 2의3.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2의3. (생략) 3. ~ 6. (생략) <신 설> <신 설>

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
-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제23조의3(유동화회사보증 등) ① 제23조의3(유동화보증 등) ① ---기금은 유동화회사가 기업의 회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포함한다), 대출채권 또 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 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 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.
 - 1. 유동화증권의 발행
 - 2.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

양수한	자산에	대한	권리의
행사			

2의4. (현행 제2호의3과 같음)

- 3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유동화보증
- 8. 회사채등 유동화신탁
- 9. 제1호·제2호·제2호의2·제 2호의3ㆍ제2호의4. 제3호부터 제8호까지-----

재보증업무-----

----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 여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 증과 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에 대해 부담하는 신용공여채

> <삭 제> <삭 제>

등의 신용공여(信用供與)

- ② 기금의 <u>유동화회사보증</u> 운영과 관련하여 <u>자산보유자</u> (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)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「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 의 업무를 수탁(受託)하여 수행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u>④</u> (생 략) <신 설>

②유동화보증
<u>자산보유자</u>
③ <u>회사채등 유동화와</u>
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
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(이
하 "유동화회사등"이라 한다)
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
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
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
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
<u>수 있다.</u>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123조의6(회사채등 유동화신탁)
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

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

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 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 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 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- ② 「신탁법」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 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,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수 있다.
-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 채등의 취득·보유·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「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부터 제33조 까지, 제40조, 제61조, 제63조, 제103조제3항, 제108조제6호, 제114조, 제415조부터 제418조 까지,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.

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 을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 로 본다.

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1조 및 「신탁법」 제36조에도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

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신탁법」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.

①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 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 제24조(업무방법서) 기금은 업무 저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1. ~ 3. (생략)
4.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~ 라. (생략)
4의2. (생략)
<<u>신설></u>

하여야 하며, 최종 계산서 공시
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
우 「신탁법」 제103조제1항에
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
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
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
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
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
<u>다.</u>
24조(업무방법서)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유동화보증</u>
 기 기 /코웨키 키 Ó \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4의2. (현행과 같음) 4이2 최시케트 으도회사타에
4의3.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
<u>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/u>
<u>가.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</u> ㄹ
나.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

5. (생략)

제25조(보증 등의 한도) ① 기금 의 신용보증, 재보증 및 <u>유동화</u> <u>회사보증</u>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(移越利 益金)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② (생 략)

제27조(조사의무) 기금이 제2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 (유동화회사보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, 사업전망, 신용상태 등을 공정 ·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.

제28조(보증관계의 성립 등) ① 7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

다.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
리・운용 방안
라.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
분배방법
마.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
위한 자금차입
5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보증 등의 한도) ①
<u>유동화</u>
<u>보증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조사의무)
<u>신용보증을</u>
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
신용조사를 할 경우 또는 같은
항 제7호에 따라 유동화보증을
<u>할 경우에는</u>
<u>.</u>
 제28조(보증관계의 성립 등) ① -

수 등의 방법

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 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. 다만, 제2조제2호다 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가 제23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 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 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0조의2(구상채권의 매각) 기금 제30조의2(구상채권의 매각) ----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 다.

1. ~ 5. (생략)

제33조(보증료 등) ① 기금은 신 제33조(보증료 등) ① ------용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

<u>利</u> 2
3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증
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경
<u>\$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--구상채권(제23조의3제4항에 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수한 자산을 포함한다. 이하 같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----기업(유동화보증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.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33조의2(수수료) 기금은 제23조 제1항제3호·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제43조의2(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) ① 기금은 국가, 지방자 치단체,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, 「국민건강보험 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근로복지공단,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
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3조의2(수수료)
제4호·제8호 및
제9호
<u> </u>
제43조의2(자료제공 및 협조의
요청) ①
亚公)①
<u>제23조제1항제2호 • 제2호</u>
의2·제2호의3·제2호의4, 제3

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(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,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구체적 항목에 한한다)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• 2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
3제4항
2
<u>제23조제1항</u>
제2호의3에 따라 양수한 자산
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
은 항 제5호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